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방송통신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(2025. 3. 18. 개정) 등의 시행을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2025. 9. 19. 시행)을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(안 제29조의2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

나. 전송자격인증의 방법·절차·범위·수수료 등(안 제30조의11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·절차·범위·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다.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(안 제30조의12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, 절차를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(2025. 3. 18. 개정)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, 제30조의11, 제30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1항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2조의11제2항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
2.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사유 해당 여부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서면점검,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30조의11(전송자격인증의 방법·절차·범위·수수료 등) ①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송자격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자등록증
2. 이용약관관

3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류심사, 현장심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송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자격인증의 신청, 인증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0조의12(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은 별표3의4와 같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.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2(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1항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</u> <u>1. 법 제22조의11제2항의 인증 기준 유지 여부</u> <u>2.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사유 해당 여부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서면점검,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11(전송자격인증의 방법 · 절차 · 범위 · 수수료 등) ①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송자격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신설>	1. <u>사업자등록증</u> 2. <u>이용약관</u> 3. 그 밖에 <u>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</u> ② <u>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, 현장심사의 등의 방법으로 한다.</u> ③ <u>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송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</u> 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자격인증의 신청, 인증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</u> 제30조의12(전송자격인증의 취소

현행	개정안
	<u>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은 별표3의4와 같다.</u> <u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.</u> <u>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

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(제30조의12제1항 관련)

I. 일반기준

1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모두 경고를 한다.
2. 개별기준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3.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.
4.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기간·내용·결과,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(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 - 가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나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다.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즉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- 라. 위반행위의 기간, 내용, 정도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마. 그 밖에 전송자격인증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II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	인증취소	
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2호	인증취소	
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3호	인증취소	
4.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4호	경고	인증취소
5. 이 법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부터 제50조의5까지, 제50조의7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	경고	인증취소
6. 이 법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	인증취소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522